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31
----------	-------

발의연월일 : 2026. 4. 20.

발 의 자 : 유용원 · 김상훈 · 김예지
송언석 · 이달희 · 강선영
김태호 · 김성원 · 성일종
김미애 · 이현승 · 김소희
조승환 · 박충권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쟁 사례에서 ‘유도무기와 유사한 운용개념을 가진 무인기’ (이하 자폭용 무인기)가 상대국 방공자산의 소모를 강요하고, 고가의 지상전력 및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등 그 활용성이 증명되었음.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유사한 전력의 신속한 개발 및 획득을 위한 소요가 제기되고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자폭용 무인기의 경우에도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행안전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부가 인증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그러나 자폭용 무인기와 운용개념 상 유사한 성격을 갖는 ‘유도무기’의 경우에는 비행안전성 인증을 위한 절차가 없으며, 날개의 형상 차이 외에는 차이점이 없으므로 자폭용 무인기에 비행안전성 인증 절차 적용은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함.

이에 자폭용 무인기의 신속한 개발 및 획득을 위해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5조(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에 ‘유도무기에 준하는 운영개념이 적용되는 군용항공기 사업 등’을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해당사유로 추가하고자 하는 개정 법률안 내용임(안 제5조제4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그 밖에”를 “그 밖에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유도무기에 준하는 운영개념이 적용되는 군용항공기 사업 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감항기준 등의 적용 제외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감항인증이 완료되지 아니한 군용항공기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감항인증기준이나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1. ~ 3의2. (생략)</p> <p>4. <u>그 밖에</u> 이 법에 따른 표준감항인증기준이나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군용항공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용항공기 사업의 경우</p>	<p>제5조(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1. ~ 3의2.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유도무기에 준하는 운영개념이 적용되는 군용항공기 사업 등</u>-----</p> <p>-----</p> <p>-----</p>